

「2025년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(소담상회 with 무신사)」 소상공인 모집공고(1차)

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「2025년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(소담상회 with 무신사)」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년 4월 1일
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

1

사업 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(소담상회 with 무신사)
 - 사업목적 : 플래그십 스토어(스마트 기반, O2O연계 등) 구축·운영을 통한 소상공인 오프라인 거점 마련 및 온라인 연계 판매 활성화 지원
 - 지원대상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* 단, '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업종'은 신청 불가
 - 지원규모 : 1,000개사
- | 구분 | 1차 모집(4월) | 2차 모집(8월) | 합계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지원 개사 수 | 500개사 | 500개사 | 1,000개사 |
- 지원내용 : 스마트플래그십 스토어 내 제품 체험 및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, 온라인 몰과 연계한 O2O 판매지원
 - 수행기관 : (주)무신사
 - 사업기간 : '25. 4. 1. ~ '25. 12. 31.

□ 추진일정(1차 공고)

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신청·접수 | 평가 및 선정 | 프로그램 지원 |
| 4/1~ 4/21 | 4/22 ~ 4/30 | 6/2~(약3.5개월) |
| 소상공인 | 평가위원회 | 소상공인 |

2

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 : 소상공인(소상공인기본법 제2조)

- 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」에 따른 소상공인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"소상공인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*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 : 10명 미만, 이 외 업종 : 5명 미만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 중소기업확인서 내 '소상공인'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업

**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<https://sminfo.mss.go.kr>)

*** 무신사 플랫폼 입점 가능 소상공인(자체 제작 정품 판매 브랜드)

□ 신청제한 : 공고일 기준,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-----|--|
| 제외업종 | ○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7 신청 불가, [붙임1] 참조 |
| 휴·폐업 및 부도 | ○ 접수 마감일 현재 「기업의 부도, 휴·폐업」 중인 경우 |
| 세금 체납 | ○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|
| 불공정행위 | ○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|
| 제외품목 | ○ 해외 수입제품, 대기업 제품 |

플래그십 스토어 개요

| 구분 | 위치 | 면적 | 스토어 구성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소담상회 성수 (11:00~20:00) | 성동구 아차산로 104 (성수역 4번출구) | 약 141평 (466.24㎡) | 3층 메인스토어, 인큐베이팅 팝업 4층 샵인샵, 회의실, 카페테리아 등 |

 주요 내용

- (지원내용)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 내 제품체험 및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, 온라인 몰과 연계하여 O2O 판매지원
 - 오프라인 스토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,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O2O 연계 프로그램 기획·운영(총1,000개사 지원)

| 구분 | 지원개사수 | 항목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O2O 입점 | 1,000개사 | · 전시·체험 및 O2O 판매, 소담 페스타 등 연계프로그램 |
| 온라인 기획전 | | · 소담상회 전용 기획전, 무신사 전사 기획전, 글로벌 기획전 |
| 교육·컨설팅 | | · 온라인 입점교육, 매출 상위 입점 브랜드 디렉터스 강연 |
| 마케팅·홍보 | | · 옥외 OOH 광고, 유튜브 콘텐츠 PPL, 체험단 및 록북콘텐츠 |
| 기타 지원 | | · 제품 기획 및 MD, 판촉 등 프로모션 지원 |

 스토어 주요 공간 * 4~5월 리모델링 진행 중


4

사업 신청 · 접수

□ 신청기간(1차) : '25. 4. 1.(화) ~ '25. 4. 21.(화) (1차모집)

* 모집 규모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: 판판대로(<https://fanfandaero.kr>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□ 제출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소상공인확인서, 납세증명서(국세·지방세), 상품기술서(판판대로-해당양식), 기타 가점서류(해당시) 등

| 구분 | 내용 | 발급처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사업자등록증 | 사업 신청 아이디 사업자번호와 사업자등록증 일치 필수 | 정부24 |
| 소상공인확인서 |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|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|
| 국세납세증명서 |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| 정부24 |
| 지방세납세증명서 |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| 정부24 |
| 상품기술서 | 선정평가 시 주요 자료로 사용되므로 상세히 작성 | 공고문에서 양식 다운로드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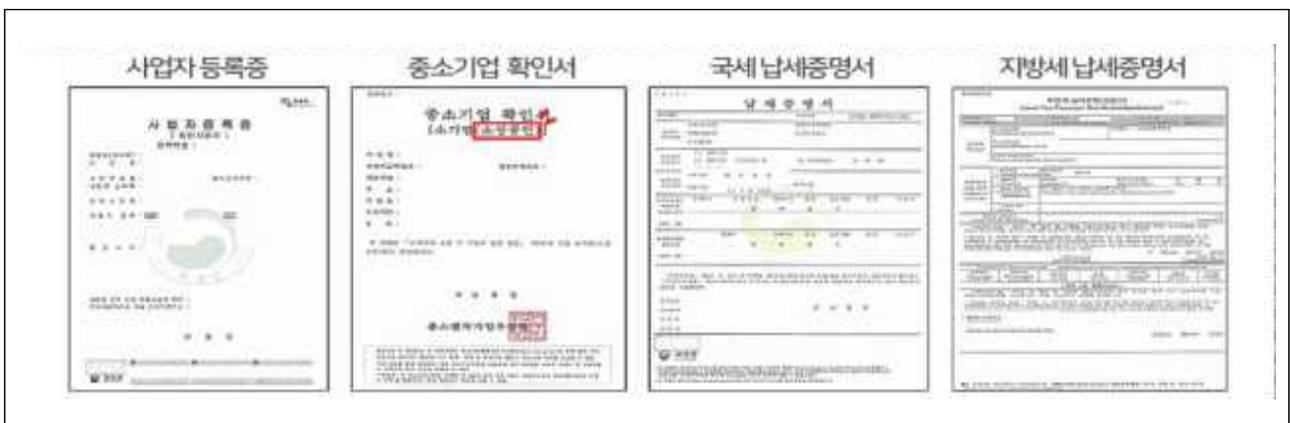
* 유효기간 예시 : 사업신청일이 4/1 경우, 유효기간이 4/1 이거나 이후에 있어야만 인정

** 회원가입 사업자번호, 사업자등록증, 소상공인확인서의 사업자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함

***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사업자번호로,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으로 발급

**** 가점서류는 [별첨 1] 중점지원 대상 및 우대사항 참조

[참고 1] 필수서류 참고 예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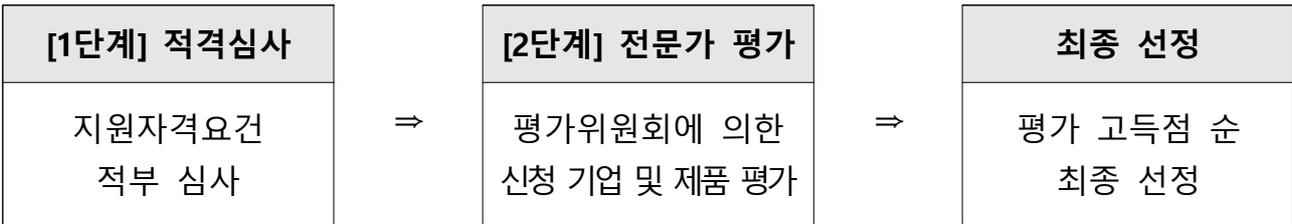
[참고 2]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 발급 안내

| |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‘중소기업확인서([소기업(소상공인)])’만 인정 -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- 소기업·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- 확인서 발급 : 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’ 접속 (URL : https://sminfo.mss.go.kr/) <p>* 발급문의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 ② 온라인 자료제출, 중소기업현황 문의 02)3215-2674 |  |
|--|---|

5 참여기업 선정

□ 평가 절차

- 총 2단계 심사·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



□ 평가 방법

- (적격심사) 신청 소상공인의 필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
 - * 필수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소상공인확인서, 납세증명서(국세·지방세) 등
- (전문가 평가) : 수행기관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참여 기업 선정 평가 추진 (5명 내외 구성)

유의사항

-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,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한유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본 사업의 동일연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
- 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,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(연락두절, 서류제출 거부 등)
- 참여 기업은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본 사업 신청 시 제 3자(브로커, 직원 등) 부당 개입(대리신청, 기타 수수료 요구 등) 적발 시 사업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 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기업에게 귀속됩니다.

문의처 : 무신사(<https://forms.gle/QuHamEnZA4ZJfj6x7>), 온판상담소(1899-0309)
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(02-6678-9364, 02-6678-9368)

<붙임1> 중점지원 대상 및 우대사항

□ 선정 우대

- 우대사항 :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(최대 5점 내에서 적용)

| 해당 사항 | 비고 |
|--|-------------|
| ① 백년소상공인, 로컬크리에이터, 브랜드K | 해당 시 +5점 |
| ② '22~'24년 아래의 정부 공모전·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- 문화체육관광부(문체부) 대한민국 관광공모전(기념품 부문) - 중소벤처기업부(중기부)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창조기업·중장년 부문 | |
| ③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(TOPS) 2단계 선정기업 * 글로벌 시장지원 사업에 한하여 가점 부여 | |
| ④ '22~'24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 | 해당 시 +3점 |

□ 신청방법 및 증빙자료

- 신청방법 : '판판대로'를 통해 사업신청 시 우대 항목을 선택하고,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
 - * 판판대로 신청 페이지 內 '기타첨부자료', '증빙'에 압축 필요
- 증빙자료

| 구분 | 증빙자료 |
|---|--|
| ① 백년소상공인, 로컬크리에이터, 브랜드K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백년가게, 백년소공인 확인서 ○ 로컬크리에이터 최종 선정 확인서 ○ 브랜드K 확인서 |
| ② '22~'24년 정부 공모전·경진대회 입상 - 문체부 대한민국 관광공모전(기념품 부문) -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창조기업·중장년 부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증빙 미제출 (※ 한유원, 소진공 별도 확인) |
| ③ '25년 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-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(TOPS) 2단계 선정기업 * 글로벌 시장지원 사업에 한하여 가점 부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증빙 미제출 (※ 한유원, 소진공 별도 확인) |
| ④ '22~'24년 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-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증빙 미제출 (※ 한유원, 소진공 별도 확인) |

<붙임2>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

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

| 표준산업분류 | 업종 |
|----------------|---|
| 33409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|
| 46102 중 | 담배 중개업 |
| 46209 중 | 앞담배 도매업 |
| 46333 | 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 |
| 46463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|
| 47640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|
| 47811 중 | 약국, 한약국 |
| 47859 중 | 성인용품 판매점 |
| 47911, 47912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|
| 47993 중 |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|
| 52991 중 | 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 |
| 56211 | 일반유희주점업 |
| 56212 | 무도유희주점업 |
| 5821 중 |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 |
| 63992 |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|
| 63999 중 |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|
| 64 | 금융업 |
| 65 | 보험 및 연금업 |
| 66 |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|
| 68 | 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|
| 76390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|
| 711, 712 | 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|
| 731 | 수의업 |
| 73904 중 | 감정평가업 |
| 75330 중 | 흥신소 |

| 표준산업분류 | 업종 |
|---------|--|
| 75993 |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|
| 75999 중 |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|
| 86 | 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|
| 91113 |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|
| 91121 | 골프장 운영업 |
| 9122 중 |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 |
| 91242 | 카지노 운영업 |
| 91249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|
| 91291 | 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 |
| 9612 중 |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|
| 96992 |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 |
| 96999 중 |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 |
| 기타 |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|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희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희주점업(56212)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용자허용 업종 >

| 재해피해 소상공인 | 용자허용 업종 |
|-----------|--|
| 공통 |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 |
| 관광특구지역 소재 |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희주점업(56211), 무도유희주점업(56212) |
| 특별재난지역 소재 |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 |